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2013)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번호 2018-51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 (미국) (ELLIOTT ASSOCIATES, L.P. (U.S.A.))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절차 명령 제 23 호

중재판정부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Mr. Oscar M. Garibaldi

Mr. J. Christopher Thomas KC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26 년 5 월 25 일

I. 절차 경과

1. 영국 고등법원의 2026 년 3 월 18 일자 명령에 따라, 다음 쟁점이 중재판정부에 환송되었다:

청와대, 보건복지부 및 장관의 조치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 협정 위반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가 부여되어야 하는지.¹

2. 2026 년 4 월 9 일 개최된 사건관리회의에 이어, 2026 년 4 월 11 일 중재판정부는 본 환송 중재절차의 진행에 관한 지시를 발령하였다. 새로운 증거의 인정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피청구국의 의사 표명과 중재판정부의 2023 년 6 월 20 일자 판정 이전에 당사자들이 입수할 수 없었던 증거를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데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는 청구인의 입장을 유의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새로운 증거의 채택을 규율하는 기준이 본 환송절차의 성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예외적인 사정이 그 증거의 인정을 정당화함을 소명하며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상대 당사자에게는 이에 대하여 답변할 기회가 부여된다.

3. 2026 년 5 월 4 일,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의 2026 년 4 월 11 일자 지시를 고려하여 환송 중재절차의 절차적 체계를 정하는 절차명령 제 22 호의 초안을 제출하였다. 동 초안은 특히 피청구국이 새로운 증거의 제출 허가를 신청할 것을 예정하였으나, 그에 따른 절차적 단계의 일정에 관하여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4. 2026 년 5 월 7 일, 중재판정부는 절차일정의 확정을 앞두고 절차가 지체 없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청구국의 새로운 증거 인정 허가 신청 제출 기한을 2026 년 5 월 13 일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제출 기한을 2026 년 5 월 20 일로 정하였다.
5. 2026 년 5 월 13 일, 중재판정부는 절차 명령 제 22 호를 발령하였고, 동 명령은 피청구국의 새로운 증거 인정 허가 신청에 관하여 앞서 정한 일자를 포함한 본 환송 중재절차의 절차일정 등을 확정하였다.
6. 같은 날, 피청구국은 새로운 증거 인정 허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하루 연장해 줄 것을 중재판정부에 요청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답변 기한 연장을 청구인에게 부여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이 요청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피청구국의 요청을 승인하였다.
7. 2026 년 5 월 14 일, 피청구국은 본 환송 중재절차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 5 건과 전문가 보고서 1 건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이하 “신청”)를 제출하였다.

¹ *Republic of Korea v. Elliott Associates, L.P.*, CL-2023-000395, Foxton 판사의 2026 년 3 월 18 일자 명령, 제 3 항 (CLA-226).

8. 2026 년 5 월 22 일, 청구인은 이에 상응하는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위 신청에 대한 답변(이하 “**답변**”)을 제출하였다.

II. 피청구국의 신청

9. 본 신청에서 피청구국은 다음과 같은 추가 증거(이하 “**추가 증거**”)를 기록에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 (a) 합병의 결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SC&T 주주들이 피청구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과 관련된 (i)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2 년 11 월 25 일자 판결(사건번호 2020 가합 600079); 및 (ii) 서울고등법원의 2026 년 2 월 12 일자 판결(사건번호 2023 나 2000796)(이하 총칭하여 “**주주청구 판결**”);²
- (b) SC&T 주가 및 합병 조건의 조작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포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이재용 등에게 제기된 형사소송과 관련된 (i)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4 년 2 월 5 일자 판결(사건번호 2020 고합 718, 920 병합); (ii) 서울고등법원의 2025 년 2 월 3 일자 판결(사건번호 2024 노 635); 및 (iii) 대한민국 대법원의 2025 년 7 월 17 일자 판결(사건번호 2025 도 2805)(이하 총칭하여 “**이재용 판결**”, 주주청구 판결과 함께 “**추가 판결**”);³ 및
- (c) “중재판정부가 추가 판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출된, 대한민국 전 대법관 김재형 교수의 법률 전문가 보고서(이하 “**김 교수 보고서**”).⁴

10. 청구인은 추가 판결을 기록에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나, 피청구국이 그 인정을 정당화하는 예외적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다만 청구인은 김 교수 보고서의 인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한다.

III. 당사자들의 입장

1. 피청구국의 입장

11.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2013 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및 1996 년 영국 중재법에 따라 새로운 증거를 인정할 광범위한 절차적 재량을 가진다고 주장한다.⁵ 특히 피청구국은 영국 판례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런던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판정부는 원 판정 당시 존재하였던 증거 기록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강조한다.⁶

² 신청, 제 11 항.

³ 신청, 제 15 항.

⁴ 신청, 제 44 항.

⁵ 신청, 제 22-23 항.

⁶ 신청, 제 24 항, *Stockman Interhold SA v. Arricano Real Estate Plc* [2017] EWHC 2909 (Comm) [132] (**RLA-180**); *Van der Giessen-De Noord Shipbuilding Division BV v. Imtech Marine & Offshore BV* [2008] EWHC 2904 (Comm), 제 113, 115 항 인용 (**RLA-179**).

12. 이러한 배경에서 피청구국은 추가 증거가 (i) 중재판정부 앞에 놓인 쟁점과 관련성이 있고 중대하며; (ii) 절차의 더 이른 단계에서 제출될 수 없었고; (iii) 그 인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⁷ 피청구국에 따르면, 이러한 예외적 사정은 추가 증거의 인정을 정당화하며, 추가 증거는 환송 쟁점의 범위에 정면으로 속하는 사안과 직접 관련되는바, 해당 쟁점은 청구인의 입장과 달리 “청와대 조치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 인정되는 손실 또는 손해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법적 및 사실적 인과관계와 그에 대하여 부여될 구제를 모두 포함한다.”⁸

A. 추가 판결

13. 피청구국은, 추가 판결이 중재판정부의 판정에서 언급된 동일 법원들의 보다 최근의 판단을 포함하여 문제된 사건들에 관한 “한국 법원 판단의 완전한 전모”를 중재판정부에 제공하므로, 추가 판결이 본 환송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쟁점과 관련성이 있고 중대하다고 주장한다.⁹ 구체적으로 피청구국은 추가 판결이 현재 중재판정부 앞에 놓인 사실적·법적 인과관계의 문제를 다룬다고 주장하는바, (i) 동일한 문제 행위에 관한 SC&T 주주들의 청구에서 비롯된 주주청구 판결은 청와대 조치와 SC&T 가 주장하는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고;¹⁰ (ii) 피청구국이 문제된 사건들에 관한 가장 최근의 완전한 국내 사법적 종합이라고 특징짓는 이재용 판결은 합병의 일반적 측면이 한국법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¹¹
14. 피청구국은 추가 판결이 본 환송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국제법과 달리 한국의 민법 및 형법에 근거하여 선고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판결과 본 환송 중재절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주장한다.¹²
15. 피청구국은 또한 5 건의 추가 판결 중 4 건은 중재의 앞선 단계에서 제출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¹³ 피청구국은 3 건의 이재용 판결과 서울고등법원의 2026 년 2 월 12 일자 판결이 모두 본 중재의 앞선 단계의 절차가 종결된 2023 년 3 월 13 일 이후에 선고되었으므로, 그 당시에는 제출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¹⁴ 나머지 주주청구 판결,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2 년 11 월 25 일자 판결에 관하여, 피청구국은 그 판결이 중재판정 전 단계에서 당사자들의 최종 서면 제출 이후 훨씬 뒤에 선고되었고 선고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추가 심리 대상으로 남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재판정 전 단계에서 이를 제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한다.¹⁵

⁷ 신청, 제 26, 43 항.

⁸ 신청, 제 6-9 항.

⁹ 신청, 제 27 항.

¹⁰ 신청, 제 29 항.

¹¹ 신청, 제 32 항.

¹² 신청, 제 14, 17 항.

¹³ 신청, 제 34-39 항.

¹⁴ 신청, 제 34 항.

¹⁵ 신청, 제 35 항.

16. 피청구국에 따르면, 추가 판결의 인정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초래하지 아니한다.¹⁶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추가 판결 중 4 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익숙”하다고 보는데, 해당 판결들은 영국 법원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원용한 바 있고 청구인도 이미 본 환송 중재절차에서 다룬 바 있기 때문이다.¹⁷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방대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어 있다는 점” 및 “그 기록에의 인정이 피청구국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유로 문서를 기록에 인정한 절차명령 제 21 호를 언급하면서, 추가 판결의 분량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논리가 본 사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⁸

B. 김교수 보고서

17. 피청구국은, 추가 판결이 중재판정부의 과업과 관련되는 한국법상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 비추어, 김 교수 보고서가 환송 쟁점과 관련성이 있고 중대하다고 주장한다.¹⁹ 피청구국은 동 보고서를 중재판정부가 추가 판결 및 그것이 기록상 다른 한국 법원 판결들과 갖는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보조자료”라고 특징짓고, 대한민국 전 대법관이라는 김 교수의 이력이 이 점에서 그를 조력하기에 특별히 적격하다고 본다.²⁰
18. 피청구국은 김 교수 보고서가 앞선 단계에서 제출될 수 없었던 추가 판결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출되는 것이므로, 이 전에 작성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²¹ 나아가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항상 추가 판결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이미 본안에서 이를 다룬 바 있으므로, 김 교수 보고서의 인정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²²

2. 청구인의 입장

19. 청구인은 우선 예비적으로, 피청구국의 신청이 본 환송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잘못 특징짓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²³ 청구인의 견해로는, 본 환송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과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영국 고등법원의 판단이 인과관계의 법적 요건, 즉 예견가능성과 근접성이 충족된다는 중재판정부의 앞선 결론을 변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좁은 것이다.²⁴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이미 방대한 1 차 증거 기록에 근거하여 판정에서 다수의 인과관계 판단을 내렸고, 그러한 판단이 영국 고등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피청구국에 대하여 여전히 구속력을 가지고 재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²⁵ 청구인은 나아가, 환송이 “취소되지 아니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청구국]이 이를 재론하도록 허용하지

¹⁶ 신청, 제 26 항.

¹⁷ 신청, 제 40, 42 항; 청구인의 2026 년 4 월 27 일자 서면, 제 81 항; 사건관리회의 속기록, 47: 17-20 면.

¹⁸ 신청, 제 42 항, 2021 년 11 월 9 일자 절차 명령 제 21 호, 제 9 항 인용.

¹⁹ 신청, 제 44 항.

²⁰ 신청, 제 44 항.

²¹ 신청, 제 45 항.

²² 신청, 제 46 항.

²³ 답변, 제 11 항.

²⁴ 답변, 제 10, 15, 46 항.

²⁵ 답변, 제 13, 15-17 항.

아니한다”는 고등법원의 경고가 피청구국이 주장하는 보다 넓은 범위를 차단한다고 강조한다.²⁶

A. 추가 판결

20. 청구인은 본 환송 중재절차에서 새로운 증거의 인정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하여는 피청구국과 견해를 같이하나, 추가 판결에 관하여는 그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²⁷
21. 관련성 및 중대성에 관하여, 청구인은 추가 판결이 환송 쟁점과 관련성도 없고 중대하지도 아니하다고 주장한다.²⁸ 청구인은 추가 판결이 본 환송 중재절차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추가 판결이 이미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판단되었고 영국 고등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본안 판단과 관련되기 때문이다.²⁹ 청구인은 나아가, 추가 판결이 피청구국이 중재의 앞선 단계에서 자신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문/홍 판결의 결론을 뒤흔들지 아니하며, 중재판정부의 판정상 사실 판단을 재론할 근거를 제공하지도 아니한다고 주장한다.³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추가 판결 자체가 문/홍 절차의 사실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민·형법상 발생하는 별개의 법적 쟁점에 근거하여 결론에 도달하였으므로, 기껏해야 동일한 기초 행위의 상이한 법적 효과를 논한 대한민국 법원 판결의 집합에 추가될 뿐이라고 지적한다.³¹
22. 청구인은 또한 다른 중재판정부 및 법원도 추가 판결을 문제된 사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i) 메이슨 대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2022 년 11 월 주주청구 판결 및 2024 년 2 월 이재용 판결을 기록에 인정하여 달라는 대한민국의 신청을 검토한 후, 피청구국이 예외적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고;³² (ii)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그 결정을 심사하면서, 해당 판결들이 “중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하였으며;³³ (iii) 영국 고등법원은 제 67 조 절차에서 추가 판결 중 4 건을 접한 후, 이재용 형사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제한적인 도움”에 그친다고만 언급하였다.³⁴

²⁶ 답변, 제 17 항, *Republic of Korea v. Elliott Associates, L.P.*, CL-2023-000395, 2026 년 3 월 18 일 자 부수적 쟁점에 관한 결정(Ruling on Consequential Issues), 제 7 항 인용 (CLA-227).

²⁷ 답변, 제 4 항.

²⁸ 답변, 제 10 항.

²⁹ 답변, 제 10-17 항.

³⁰ 답변, 제 18-21 항.

³¹ 답변, 제 22, 24 항.

³² 답변, 제 27-28 항, *Mason Capital L.P. (U.S.A.) and Mason Management LLC (U.S.A.) v. Republic of Korea*, PCA 사건 번호 2018-55, 2024 년 4 월 11 일자 최종 판정문, 제 102, 103, 108, 109 항 인용 (CLA-219).

³³ 답변, 제 28 항, *Republic of Korea v. Mason Capital and another* [2025] SGHC(I) 9, 제 146 항 인용 (CLA-228).

³⁴ 답변, 제 29 항, *Republic of Korea v. Elliott Associates, L.P.* [2026] EWHC 368 (Comm), 제 32 항 인용 (CLA-222).

23. 사전 제출 불가능성에 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추가 판결을 더 이른 단계에서 제출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³⁵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주청구 판결은 2022 년 11 월에 선고되어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약 7 개월 전에 이용 가능하였고, 피청구국이 당시 이를 기록에 추가하는 허가를 구하지 아니한 것은 그 판결의 중대성 결여를 확인시켜 준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³⁶ 서울고등법원의 주주청구 판결 및 3 건의 이재용 판결에 관하여, 청구인은 해당 판결들이 중재판정 이후에 선고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피청구국이 본 절차가 재개된 때로부터 본 신청을 제출하기까지 최소 2 개월을 지체하였다고 지적한다.³⁷ 이 점에서 청구인은, “중재에서 최종 서면 제출 이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 “예외적 사정”이 구성되지 아니한다는 *메이슨* 중재판정부의 판시를 상기시킨다.³⁸
24. 위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추가 판결이 본 환송 중재절차의 결과에 “전혀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절차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늦어도 2026 년 5 월 27 일 수요일까지 추가 판결 및 그 번역본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추가 판결을 기록에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³⁹

B. 김교수 보고서

25. 청구인은 김 교수 보고서가 기록 인정에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그의 인정이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⁰
26. 청구인에게 있어 김 교수 보고서는 환송 쟁점과 관련성이 없고 중대하지도 아니하다.⁴¹ 동 보고서는 중재판정부가 추가 판결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출되는 것이지만, 청구인이 위에서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그 판결들 자체가 본 환송 중재절차와 관련성이 없고 중대하지 않으므로, 보고서의 관련성은 그것이 다루는 판결들의 관련성을 넘어설 수 없다.⁴² 청구인은 또한 환송 쟁점이 한국법이 아닌 국제법의 문제로서 중재판정부가 판단하여야 할 좁은 문제를 제기하므로, 한국법에 관한 전문가 증거는 초점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⁴³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동일한 김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피청구국의 유사한 신청에 직면한 영국 고등법원이 그러한 증거가 “중재 청구를 해결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법원에 중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을 지적한다.⁴⁴

³⁵ 답변, 제 31, 34 항.

³⁶ 답변, 제 32-33 항.

³⁷ 답변, 제 34 항.

³⁸ 답변, 제 34 항, *Mason Capital L.P. (U.S.A.) and Mason Management LLC (U.S.A.) v. Republic of Korea*, PCA 사건 번호 2018-55, 2024 년 4 월 11 일자 최종 판정문, 제 109 항 인용 (CLA-219).

³⁹ 답변, 제 4 항.

⁴⁰ 답변, 제 5 항.

⁴¹ 답변, 제 45 항.

⁴² 답변, 제 45 항.

⁴³ 답변, 제 46 항.

⁴⁴ 답변, 제 49 항, *Republic of Korea v. Elliott Associates, L.P.*, CL-2023-000395, Butcher 판사의 2024 년 10 월 14 일자 명령, 1-2 면 인용 (CLA-235).

27. 청구인은 나아가, 피청구국이 중재판정부가 추가 판결을 해석함에 있어 왜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어쨌든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덧붙이며, 특히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읽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중재판정 자체에서 이미 보여주었고, 이는 문/홍 판결과 합병무효 소송에서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⁴⁵
28. 끝으로, 청구인은 현 단계에서 김 교수 보고서를 인정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⁶ 영국 고등법원 절차를 위하여 동 보고서가 처음 작성된 2024 년 4 월 이래 피청구국이 이를 보유하여 왔음에도,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가 새로운 증거를 도입하겠다는 피청구국의 신청 의사를 여러 차례 다루었음에도, 피청구국은 어느 시점에도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할 의도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절차일정 및 청구인에게 부여된 심리 준비기간은 어떠한 전문가 증거도 도입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정해졌다.⁴⁷
29. 청구인은 나아가, 피청구국의 신청이 김 교수 보고서가 추가 판결의 “한국법상 일정한 측면”을 다룬다는 것으로만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응하는 전문가를 특정하여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⁴⁸ 청구인은 2026 년 6 월 5 일해야 비로소 동 보고서의 내용을 처음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이후 대응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3 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유만으로도 동 보고서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⁹

IV. 중재판정부의 분석

30. 피청구국의 신청을 규율하는 관련 규칙은 2013 년 UNCITRAL 중재규칙 제 27(4)조 및 절차 명령 제 22 호 제 5.2 항에 규정되어 있다. UNCITRAL 중재규칙 제 27(4)조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성, 중대성 및 증명력을 결정한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포함하여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31. 절차 명령 제 22 호 제 5.2 항은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새로운 증거의 인정을 정당화하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하여 중재판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동 신청은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기록에 포함되기를 구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위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당사자들은 허가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 사정”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 새로운 증거가:

(a) 중재판정부 앞에 놓인 쟁점과 관련성이 있고 중대할 것;

⁴⁵ 답변, 제 47-48 항.

⁴⁶ 답변, 제 36, 43 항.

⁴⁷ 답변, 제 36-38 항.

⁴⁸ 답변, 제 40-41 항.

⁴⁹ 답변, 제 42-43 항.

(b) 절차의 더 이른 단계에서 제출 될 수 없었을 것; 및

(c) 상대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초래하지 아니할 것.⁵⁰

33.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피청구국이 추가 판결의 본 환송 중재절차에 대한 관련성과 중대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추가 판결에 관한 피청구국의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지한다. 추가 판결의 인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가 없는 이상, 중재판정부는 추가 판결이 절차 명령 제 22 호 제 5.4 항의 의미에서 “예외적 사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설득력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추가 판결은 기록에 인정된다.

34. 위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김 교수 보고서의 인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권한을 검토한 결과,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요청이 "예외적 사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김 교수 보고서가 중재판정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대리인이 추가 판결이 중재판정부에 계속 중인 쟁점에 대하여 갖는 관련성 및 중대성을 설명함에 있어 김 교수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양 당사자가 모두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한국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주지한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원 절차에서 다수의 판결들이 기록에 제출되었음에도 피청구국이 이와 같은 성격의 법률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아니하였음을 상기한다. 피청구국은 본 환송 중재절차에서 그러한 보조 증거가 왜 관련성이 있고 중대한지 설명하지도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김 교수 보고서를 인정하여 달라는 피청구국의 허가 요청이 기각되더라도 피청구국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 2026 년 6 월 5 일에 제출되는 피청구국의 환송 쟁점에 관한 서면과 2026 년 6 월 26 일에 제출되는 청구인의 반박 서면 사이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3 주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 교수 보고서의 인정은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35. 중재판정부는 절차 명령 제 22 호 제 5.4 항에 따라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가 부여되는 경우, 상대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제시하고 적절한 경우 대응 문서를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을 상기한다. 청구인은 추가 판결에 관한 의견 및 적절한 경우 대응 문서를 환송 쟁점에 관한 반박 서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V. 중재판정부의 결정

36. 상기를 고려하여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결정한다:

(a) 추가 판결을 기록에 인정하여 달라는 피청구국의 요청을 인용한다;

(b) 김 교수 보고서를 기록에 인정하여 달라는 피청구국의 요청을 기각한다;

⁵⁰ 신청, 제 26 항; 답변, 제 3 항.

- (c) 피청구국은 영어 번역본이 이미 존재하는 추가 판결을 2026 년 5 월 27 일까지 제출하도록 명한다;
- (d) 피청구국은 영어 번역본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추가 판결을 2026 년 5 월 29 일까지 제출하도록 명한다; 및
- (e) 중재판정부는 본 신청의 비용에 관한 결정을 유보한다.

중재지: 영국 런던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